

규 칙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공공 행정관

2022년 12월 22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60호

붙임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의회의 사무국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법정대리) 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u>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u></p> <p>② (생략)</p>	<p>제2조(법정대리)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u></p> <p>3. <u>수석전문위원</u>----- -.</p> <p>② (현행과 같음)</p>